개선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현대캐피탈㈜

2. 조치일 : 2024. 4. 17.

3. 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개선사항 7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내규 운영 미흡

회사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규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내규 중 일부의 내용이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실제 업무가 내규와 다르게 수행되는 등 내규의 관리와 운영이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적정하게 운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상위 법령과 내규가 일치하도록 내규를 정비하고 실무자가 내규를 활용하여 업무를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실제 업무수행 내용을 참조하여 구체적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 신상품에 대한 사전위험평가 체계 미흡

회사는 신규 상품 출시 전 해당 상품이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인 경우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

㈎ 기존 상품이 변경되어 출시되는 경우 최초 상품 출시일, 상품 변경일, 위험평가 실시일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해당 상품에 대한 최종 위험평가 이력을 확인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 신규 상품 출시 전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 대상 여부의 확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시스템으로 통제하는 절차가 없고, 신규 상품 여부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였으나 실제 업무시에는 이를 활용하지 않고 업무 담당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일부 신상품의 경우 사전위험평가 업무처리가 누락될 우려가 있다.

㈐ 신규 상품 위험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 등급을 규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평가자에 따라 위험평가결과가 주관적으로 정해질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신규 상품 또는 기존 상품의 변경 상품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 업무가 누락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신규 상품 판단 기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재정비하는 등 위험평가시 평가결과가 합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평가등급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3)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 체계 미흡

회사는 고객과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를 식별하고, 검토담당자의 검토 후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보고책임자의 최종 검토·승인을 거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운영상 다음과 같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

㈎ 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을 운영 중이나, 고위험국가 최신 리스트가 반영되지 않는 등 일부 추출기준이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

㈏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에 대한 적정성 점검이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심스러운 거래의 추출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적정성 점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필요시 미흡한 부분을 개정하여 운영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4) 요주의인물 자료 관리 소홀

회사는 고객에 대해 요주의인물 여부를 확인하고 요주의인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수행하는 등의 고객확인 업무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상 다음과 같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

㈎ UN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 OFAC에서 발표하는 제재대상자 등의 요주의인물 리스트가 2019년 이후로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아 요주의인물에 해당되는 경우 취하여야 하는 거래거절 또는 고위 경영진의 승인 등의 필요한 조치가 적기에 수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 FATF 지정 위험국가 리스트의 경우 관련 데이터는 입수하고 있으나 이를 고객확인 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아 위험국가 국적의 고객에 대해 취하여야 하는 거래거절 또는 강화된 고객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요주의인물 리스트를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하고 동 자료를 고객확인 업무 등에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객확인 업무 시스템을 개선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5) 고객확인 및 검증 업무체계 미흡

회사는 고객확인 업무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 등을 내규에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다.

㈎ 내부 규정에 고객확인의 대상, 시기, 거래유형, 거래채널, 위험정도 등에 따른 구체적이고 적절한 조치 및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아 임직원이 고객

확인 대상, 시기, 위험정도 등에 따라 적절하지 않게 고객확인업무를 수행할 우려가 있다.

㈏ 고객확인이 이루어진 이후 업무의 적정성을 점검 및 관리하는 절차가 없어 일부 고객의 경우 고객확인 내역이 미흡함에도 별도 조치 없이 고객확인 업무가 완료되는 등 전반적인 고객확인 업무에 대한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고객확인 업무에 대해 구체적 절차, 적절한 조치방법 등을 내규에 마련하고,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처리 체계를 재정비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6) 고객위험평가 관리 체계 미흡

회사는 고객위험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확인 업무 등에 활용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다.

㈎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위험평가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각 항목이 최신 자료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최신기준에 따라 고객의 정보에 변화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 위험평가모형이 고객 및 상품의 위험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가 없고 점검 내역도 없어 고객의 위험 수준이 적정하게 평가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고객의 위험도가 적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고객위험평가 모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7) 고객정보 관리 미흡

회사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및 여신업무 운영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고객정보를 발견하는 경우 데이터 적정성을 점검 및 수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

비정상 고객정보 보유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거나 검증하는 절차가 없어 일부 고객의 경우 실제 고객확인 업무수행시 확인한 정보와 다른 내용으로 관리되고 있다.

또한 일부 고객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시스템과 여신업무 운영시스템 간 정보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동일 시스템내 데이터베이스간에도 서로 다른 내용의 정보로 관리되고 있는 등 고객정보 관리에서 미흡한 사항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로 인해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 수행시 적기에 정확한 고객정보를 확인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고객의 정보가 최신의 정확한 정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비정상 데이터 검증을 수행하고, 고객정보 보관, 이용 및 처리 시스템간 고객정보가 상호 일치하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